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2

제출연월일 : 2003년 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 제안이유

-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의 설치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기구명칭 및 소관사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신설되는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의 기구명칭 및 소관사무 등을 명시함.

## □ 의안전문 : 별첨

##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 관계법령 발췌 : 별첨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제6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제49조 내지 제51조)를 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제52조 내지 제54조)로, 제7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제52조 내지 제54조)를 제8절 충청북도 종자보급소(제55조 내지 제57조)로 하고, 동장에 제6절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제49조 내지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절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제49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남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시설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청남대 관리사업소(이하 "청남대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청남대관리사업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

제50조(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1조(소관사무)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掌한다.

1. 주변환경 보전 및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2. 청남대 주요시설 유지관리
3. 관광홍보·안내 및 각종 편의제공
4. 주변지역 민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사업소	제4장 사업소
제1절 내지 제5절 (생략)	제1절 내지 제5절 (현행과 같음)
<u>&lt;신설&gt;</u>	제6절 <u>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u>
<u>&lt;신설&gt;</u>	제9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남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 시설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청남대 관리사업소(이하 "청남대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청남대관리사업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
<u>&lt;신설&gt;</u>	제10조(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합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소관사무)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찰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변환경 보전 및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li> <li>2. 청남대 주요시설 유지관리</li> <li>3. 관광홍보·안내 및 각종 편의제공</li> <li>4. 주변지역 민원 및 지원에 관한 시사항</li> </ol>
제6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제49조 내지 제51조 (생략)	제52조 내지 제54조 (현행과 같음)
제7절 충청북도중자보급소	제8절 충청북도중자보급소
제52조 내지 제54조 (생략)	제55조 내지 제57조 (현행과 같음)

## 관련 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 제102조 (행정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05조 (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의 정원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써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